##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26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전진숙·남인순·김선민

이수진 • 박희승 • 허종식

이훈기 • 이정문 • 김남희

이연희 · 권칠승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었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및 제17조).

법률 제 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육아와"를 "육아·중증질환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육아와"를 "육아·중증질환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모성 및 장애특성"을 "모성, 장애특성 및 중증질환"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휴직"을 "휴직, 중증질환 치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 <u>육아</u>	가 <del>육아</del> •		
<u>와</u>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	<u> 중증질환과</u>		
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3		
혼인·임신·출산· <u>육아와</u> 가	<u>육</u> 아 · 중증질환과		
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			
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			
다.	<b>.</b>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생 략)	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	2		

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혼인·임신·출산과 <u>휴직</u>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
    공 및 경력관리
  - 2. ~ 7. (생략)
  - ②・③ (생 략)

모성, 장애특성 및 중증질환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1 <u>휴직, 중증</u>				
<u> 질환 치료</u>				
 2. ~ 7. (현행과 같음)				
2·③ (현행과 같음)				